
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140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5. 2.

발의자 : 박재호 · 홍익표 · 김병기

신창현 · 김해영 · 민홍철

이용득 · 박정 · 송기현

위성곤 · 윤호중 · 최재성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,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신고,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의 신고, 사업의 휴업 · 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31조, 제32조, 제33조 및 제36조).
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신고하여야 한다”를 “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를 받은 시 · 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32조 전단 중 “신고하여야 한다”를 “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를 받은 시 · 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신고하여야 한다”를 “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를 받은 시 · 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 단서 중 “신고하여야 한다”를 “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를 받은 시 · 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, 신고를 받은 시 · 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(再開)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⑤ (생략)

④ -----

-----. 이 경우, 신고를 받은 시·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

⑤ (현행과 같음)